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2선거구 김종무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 조례는 재건축·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조합해산을 지연시켜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익금을 조합운영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의 피해와 민원을 줄여가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.

○ 현행 법령상, 정비조합 해산시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정비사업 완료 후 해산총회 미개최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미해산조합에 대한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

○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

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조합해산 준비를 추가하고

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조합에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

행정청이 미해산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

정비조합이 적정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하고

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